

지원금(융자금) 회수 통지서

성명 (또는 법인명)		생년월일 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	
주소 (또는 법인 주소지)			
지급 금액		지급일	
회수 금액		납부 기일	
회수 사유			
납부 방법			
기타 사항			

「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사실을 통지합니다.

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또는 광주광역시장

